2026. 12. 23.(수) 실시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일러두기〉

1.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 및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정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거사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안내서의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관할위원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규칙

3.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제출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4.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 및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목 차

Ⅰ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개요

1. 선거일 및 선거기간 ····· 3
2. 후보자등록 ····· 3
3. 선거운동 ····· 3
4. 투표 및 개표 ····· 4
5. 당선인 결정 ····· 4

Ⅱ | 후보자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 7
2. 후보자등록 신청 ····· 11
3. 등록무효 사유 ····· 18
4. 후보자 기호 결정 ····· 18
5. 후보자 사퇴 신고 ····· 18

Ⅲ | 투표 및 개표참관

1. 투 · 개표참관인 선정 · 신고 등 ····· 21

Ⅳ | 선 거 운 동

1. 선거운동의 정의 ····· 25
2.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 25
3. 선거공보 ····· 26
4. 어깨띠 · 윗옷 ····· 26
5. 전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26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27
7.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28
8. 정책토론회 ····· 29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29
10.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 30
11. 제한 · 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 31

＊ | 부 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35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 37
3. 각종 신고 · 신청 · 제출 서식 목록 ····· 38

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 개요

후보자의 주요 신고·신청 및 참여사항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12. 10.(목)~12. 11.(금) (09:00 ~ 18:00)	후보자등록신청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소회의실)
12. 11.(금) 18:00 후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	
12. 12.(토)까지	선거공보 제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12. 21.(월)까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겸임) 선정·신고	북구선거관리위원회

Ⅰ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개요

1 임기 및 선거일

- **선 거 일** : 2026. 12. 23.(수)
- **선거기간** : 2026. 12. 12.(토) ~ 12. 23.(수) 12일간

2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6. 12. 10.(목) ~ 12. 11.(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26. 12. 12.(토) ~ 12. 22.(화) 11일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 **선거운동의 정의**
 -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4 투표 및 개표

- **소견발표회** : 2026. 12. 23.(수) 오후 1시 ~ 오후 1시 30분
- **투표일시** : 2026. 12. 23.(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 **투표소** :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체육관) (전남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15)
- **투표절차**
 - ✔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날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개 표**
 - ✔ 개표개시 : 투표종료 후 동일장소에서 개표 진행
 - ✔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 · 봉인 검사 후 개함
 - ✔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심사 · 집계(개함 · 점검부) ➜ 투표지 재심사·집계(심사·집계부)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결과 인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5 당선인 결정

- **결정주체**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 **결정방법**
 - ✔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

 (단,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에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Ⅱ.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보자 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후보자등록 신청 전(토·일, 공휴일은 제외)
- 장　소 : 북구선거관리위원회(3층, 소회의실)
- 대　상
 - ✔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 ✔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Ⅱ | 후보자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결격사유

1)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및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여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바)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2)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아)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가 회원단체(회원시·군·구종목단체, 회원읍·면·동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나. 후보자 자격기준일 : 2026. 12. 10.(목)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다. 후보자등록의사 표명 또는 사직기한

1) 체육단체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체육단체 상임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 2026. 11. 18.(수)까지 선거일 전 35일

※ 체육단체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경우 사직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

②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5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의 사직기한 : 2026. 12. 9.(수)까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접수한 때 사직한 것으로 봄.

라. 연임제한 기준

1)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 산정 시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2) 다만,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6. 12. 10.(목) ~ 12. 11.(금)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관할위원회 사무실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의함.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준비절차

1)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후보자등록신청서	**필수**	[붙임 1]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구·시·군 및 읍·면·동의 장 발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발급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필수**	가정법원의 장 발행 ※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발급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	해당 단체의 장 발행, [붙임 2] 참고 ※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	해당 단체의 장 발행, [붙임 3] 참고 ※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었던 경우
사직서 제출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	해당 단체의 장 발행, [붙임 3] 참고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이었던 경우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범 죄 경 력 조 회 회 보 서	**필수**	국가경찰관서의 장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결과 공문 (해당자에 한함)	**필수**	광주광역시체육회 ※ 대한체육회가 재심의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회장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기 탁 금 입 금 표 (무통장입금표 등)	**필수**	금융기관 발행
납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체납내역)		세무서, 시·군·구청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또는 지방세납부대상		시·군·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 위택스(https://www.wetax.go.kr)발급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 홈페이지(https://www.kcredit.or.kr)발급
사직원 접수증 (국회의원 등 해당자에 한함)		소속기관의 장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후보자 사진 2매 (칼라 3㎝×4㎝, 전자파일 포함)		3㎝×4㎝의 천연색으로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기간 ➠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 30일(2026.11.10.)~후보자등록 시

※ "**필수**"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 미제출 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무효)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

2)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 작성방법 :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

(2)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려는 후보자 인영으로 날인함.
- 학력 기재 시 비정규학력은 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판례)**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를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최종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당선무효
> (부산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56059 판결)

- 경력란에 당원 경력을 기재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6)**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21조의2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2) 유의사항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
※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불요

(3)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가정법원에 신청
※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2)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라)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정관 제30조제1항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2) 발급신청처 : 소속된 경력이 있는 단체

※ 과거 복수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마다 확인서 각각 제출

※ 과거 소속 단체가 소멸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발급

➠ 홈페이지주소(https://dis.k-sec.or.kr/), 연락처(1551-2876)

(3) 발급서류 : 붙임 2 서식에 따른 확인서

(4)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5) 유의사항 :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2026. 12. 10.) 기준으로 조회

마)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함)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2) 발급신청처 :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3 서식에 따른 확인서

(4)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바) 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또는 상임 임·직원이었던자

(2) 발급신청처 : 사직서를 제출한 체육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3 서식에 따른 확인서

(4)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사)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 회보 신청

(2) 발급신청처 : 국가경찰관서

(3)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아)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결과 공문(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정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임 심의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

(2) 발급신청처 :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 대한체육회가 재심의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발급

자)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작성대상 :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자

(2) 작성방법 : 붙임 4 서식 작성·제출

(3)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차) 회장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 작성방법 : 붙임 5 서식 작성·제출

(2) 발급기간 : 2026. 11. 10.(화) ~ 후보자등록 시

카) 기탁금 입금표 :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표 등

타) 납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체납내역)

(1) 발급대상 : 국세를 완납한 사람은 “납세증명서”,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사실증명(체납내역)”

(2) 발급방법 : 후보자가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로도 발급가능

※ 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의 조회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날짜까지"**

※ 조회 시점에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됨.(조회시 별도 기간 설정 불가능)

파)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또는 지방세 납부대상

(1) 발급대상 : 지방세를 완납한 사람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지방세 납부대상"

(2) 발급방법 : 후보자가 시·군·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 시 '연대납세자 포함하지 아니함'

※ 위택스(https://wetax.go.kr)로도 발급가능

※ 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의 조회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날짜까지"**

※ 조회 시점에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됨.(조회시 별도 기간 설정 불가능)

하) 신용정보조회서 : 후보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청

※ 홈페이지(https://kcredit.or.kr)로 발급

거)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2) 발급신청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소속 기관

(3)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 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4) 유의사항 :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일(2026. 12. 9.)까지 사직하여야 함.

너)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붙임 6 서식 작성·제출

더) 후보자 사진(2매) : 3㎝×4㎝의 천연색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제출(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3) 기탁금의 납부

가) 납부금액 : 1,000만원

나)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다) 납부방법 : 관할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 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라) 납부계좌 안내

-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우체국 110-0157-92310
- 예금주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기탁금의 반환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반환기한 : 2027. 1. 22.(선거일 후 30일) 이내
-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기탁금의 귀속[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로 귀속]

- 귀속사유 :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 귀속기한 : 2027. 1. 22.(선거일 후 30일) 이내

3 등록무효 사유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p.11~12 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 표기된 서류를 말함.)

3)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함.)

4 후보자 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6. 12. 11.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후

나. 결정기관 : 관할위원회

다. 결정방법

1)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위임장 제출, 붙임 7 서식)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함. (단,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추첨함.)

2)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하고(1차), 그 추첨순위에 따라 기호 결정을 위한 추첨(2차)을 함.

5 후보자 사퇴 신고

가. 결정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관할위원회

다. 신고방법 : 후보자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8 서식에 의함.

Ⅲ. 투표 및 개표참관

Ⅲ | 투표 및 개표참관

1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6. 12. 21.(월)까지

다. 신 고 처 : 관할위원회

라. 신고인원 : 후보자별 2명 이내

※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임함.

※ 투표참관인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개표참관인 겸임' 기재

마. 투·개표참관인의 자격

1)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의 선거권자

2)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후보자

나) 후보자의 배우자

다)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의 임·직원

바. 투·개표참관인 지정

1) 지정조건 :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밖에 없는 때

2) 지정방법 : 관할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규칙 제24조제2항]

※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투·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0 서식에 의함.

자. 참관요령

1) 투·개표소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투·개표소 안에서는 출입자 표지를 항시 잘 보이도록 걸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2) 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표관리관 또는 개표책임사무원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 투표소 설치와 선거일 투표 개시 전과 마감 후의 투표함 등 봉함·봉인 과정 참관
- ☑ 투표 개시시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한 검사 및 투표함 봉쇄·봉인,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과정과 투표·개표 및 선거록에 등록된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과정 참관
- ☑ 선거인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 등 투표상황 참관
- ☑ 투표간섭 및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 ☑ 투표소내의 사고발생시 촬영
- ☑ 투표종료 후 투표함의 투입구 및 그 자물쇠의 봉쇄·봉인 참관
-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 요구
- ☑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 순회·감시 또는 촬영
-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시정요구

차. 금지행위

- 참관 도중 선거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행위
- 투·개표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행
-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Ⅳ. 선 거 운 동

Ⅳ | 선 거 운 동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26. 12. 12.(토) ~ 12. 22.(화) 11일간

※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다. 선거운동 방법

1) 선거공보(체육회 홈페이지 게시)

2) 어깨띠 · 윗옷

3) 전화 · 문자메시지

4) 정보통신망

5) 명함

6) 정책토론회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3 선거공보

가. 선거공보의 작성

1) 작성주체 : 후보자

2) 작성방법 : 전자적 문서 형식으로 8면 이내 선거공보 1종 작성

3)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해상도 300dpi이상(또는 원본 고해상도) PDF파일

나. 선거공보의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2. 12.(토)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2) 제출처 : 해당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 선거공보 작성(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제출방법은 해당 체육회에 문의

4 어깨띠 · 윗옷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종류 및 규격 : 제한 없음

라. 방 법 :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5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다. 방　　법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1)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단,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함)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

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 주　　체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2) 사　　유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

3) 조치방법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마. 위법행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사람

2) 이의신청기간 : 해당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3) 방법 : 붙임 11 서식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

4) 결과통지

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7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규 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라. 방 법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다만, 체육시설의 경기·훈련시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단체의 사무실 안에서는 제외

8 정책토론회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결정한 경우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가. 주 체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나. 실시방법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 발표

※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일 소견발표 중계·홍보 및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상녹화물 게시 가능

다. 발표시간 : 후보자별 10분 이내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

라. 발표일시 : 2026. 12. 23.(수) 13:00 ~ 13:30

마. 발표장소 : 투표소

바. 유의사항

1)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름.

2)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3)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 불가

4)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견발표 중지 등 조치

5) 소견발표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지하고, 불응 시 퇴장 조치

위법내용 발언에 대한 필요 조치(예)

- 후보자가 위법내용(허위사실 또는 후보자등 비방) 발언시 경고카드를 제시하여 경고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 마이크 전원차단 및 발언 중단조치

10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가. 신청기간 : 2026. 12. 12.(토) ~ 12. 22.(화)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다. 신청서식 : 붙임 9

라. 교부대상 :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마. 유의사항 : 선거인명부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함.

11 제한 · 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참고

선거운동 등 유의사항

- 규정 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에 따라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 및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 표방(당원경력 표시 포함) 금지

부 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 홍 길 동　　(한자 : 洪 吉 童)
2.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3. 등록기준지 : ○시 ○구 □□로 ◎◎(◇◇동)
4. 주　　소 : ○시 ○구 △△로 □□ 000동 0000호(ㅁㅁ아파트, ◇◇동)
 [전화번호 : 000)000-0000, 휴대전화번호 : 010-0000-0000]
5. 직　　업 : ○○회사대표
6.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7. 경　　력 : (전) ○○○체육회 이사
 (현) ○○○○대표

2026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12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3.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0부
4.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0부
5.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부
6.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결과 공문(해당자에 한함) 0부
7.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0부
8. 회장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9. 기탁금 입금표(또는 이체확인증) 1부
10. 납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체납내역) 1부
11.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또는 지방세납부대상 1부
12. 신용정보조회서 1부
13. 사직원 접수증(국회의원 등 해당자에 한함) 1부
14.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15. 후보자 사진 2매(3cm×4cm, 전자파일 포함)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1. 성 명” 란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번호” 란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3. 등록기준지” 란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4. 주 소” 란	•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주소지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도로명 주소’를 기재
“5. 직 업” 란	•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1개)을 기재함. ☞ 예시) ○○대표 등
“6. 학 력” 란	• 학력(비정규 학력 포함)은 출신학교명 또는 수학한 교육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 ·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 ※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 (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7. 경 력” 란	•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기재함. ※ 현직의 경우 “현”, 전직의 경우 “전”으로 표시함. ※ 정당의 당원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
“8. 신 청 인” 란	•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1.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회장선거관리규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관련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전화, 문자)	규정 제23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	규정 제24조	이메일주소

 *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받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 · 변조 ·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를 지정 · 공개하여야 함.

7.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 39

2.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41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42

4.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 43

5. 회장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44

6.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45

7.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 46

8. 후보자 사퇴신고서 / 48

9.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 / 49

10. 투표참관인 (선임·교체) 신고서 / 50

11.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51

붙임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　　(한자 :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

2026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12월　　일

신청인　　○ ○ ○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3.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
4.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
5.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부
6.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결과 공문(해당자에 한함) ○부
7.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
8. 회장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9. 기탁금 입금표 1부
10. 납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체납내역) 1부
11.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또는 지방세납부대상 1부
12. 신용정보조회서 1부
13. 사직원 접수증(국회의원 등 해당자에 한함) 1부
14.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15. 후보자의 사진 2매(3cm×4cm, 전자파일 포함)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이내)만을 적습니다(당원 경력 기재 불가).
※ 현직의 경우 (현), 전직의 경우 (전)으로 표시함.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2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징계사실 기준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 징계내역 > ※ *위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해 작성*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선수관리담당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붙임 3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당시 직위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추천단체명)은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일자 : 년 월 일

2026년 월 일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추천단체명) (직인)

붙임 4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민선3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5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회장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민선3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회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6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후보자 ○○○	인 영

2026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후보자 ○ ○ ○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7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피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후보자와의 관계	

위 사람에게 2026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위임함.

덧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026년 월 일

후보자 ○ ○ ○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덧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12월 23일 실시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회장 임기 중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 기호 추첨 피위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8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선 거 명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2. 후보자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퇴 사 유 :

위 본인은 2026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후 보 자 ○○○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9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보안서약서 포함)

1. 후 보 자 명:
2. 생 년 월 일:

위 본인은 민선3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준수사항

 1.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후보자 ○ ○ ○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붙임 10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투표참관인 (선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2. 참관인

투표소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선거권자 여부	비 고
					□	개표참관인 겸임
					□	개표참관인 겸임

2026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임)・(교체)신고합니다.

2026년 12월 일

후 보 자 ○ ○ ○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참관인이 해당 체육회의 선거권자인 경우 “선거권자 여부”칸에 “V” 표시를 합니다.
2. 교체신고 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붙임 11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 ○ ㊞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 선거일 : 2026. 12. 23.(수)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임기만료일 1년 전부터 26.12.23.(수)까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등	임기만료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34, §35 규정§28, §30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 위탁신청	위탁단체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규정§6①
26.11.05.(목)까지	선거권자 자격 확인 및 명부 정비	위탁단체, 체육회 정회원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선거일 전 48일까지)	법§15④ 규정§10⑤
26.11.18.(수)까지	· 체육단체의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일 전 35일까지	규정§16②⑦
26.12.02.(수) ~ 12.04.(금)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21일부터 3일간	규정§12
26.12.04.(금)까지	선거일 등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26.12.05.(토) ~ 12.07.(월)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18일부터 3일간	법§15① 규정§13①
26.12.08.(화) ~ 12.1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규정§14②15①
26.12.09.(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규정§16①
26.12.10.(목) ~ 12.11.(금)	**후보자등록 신청** <관할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6.12.11.(금)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 날	법§15① 규정§14③
26.12.12.(토)	**선거기간개시일**			법§13 규정§7
26.12.1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 10일까지	규칙§18①
26.12.14.(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법§43
26.12.18.(금)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 5일까지	규칙§25①
26.12.21.(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 2일까지	법§45① 규칙§24①
26.12.22.(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규칙§24①
26.12.23.(수)	**투·개표**		선거일	법 제8장
27.01.22.(금)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78⑦ 규칙§44②

※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규정: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